(제5-1-1호)

유상증자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000,000
	우선주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 (주)	3,740,310
	우선주 (주)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12. 납입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증권회사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20.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주우선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조정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8. 신주배정기준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11.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일반공모	
12. 납입일		
13. 신주의 배당기산일		
14. 신주권교부예정일		
15. 신주의 상장 예정일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18.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일반공모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우선주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9. 청약예정일	우리사주조합	
	일반공모	
10. 납입일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12. 신주권교부예정일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4,000,000주
	우선주 (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 8조
9. 납입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대주주승인을 득한 일로부터 2영업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이사회(2017.06.28)/주주총회(2017.06.2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15.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배정주식수(주)	비고
웨일인베스트먼트	-	4,000,000주	

<기재상의 주의>

주1)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에 관한 결정일 현재의 당해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기재한다.

주3) "증자방식"에는 주주배정증자, 주주우선공모증자, 일반공모증자 또는 제3자배정증자 방식 중 해당 증자방식을 기재한다.

주4) "신주발행가액"은 신고일 현재 발행가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방법 및 확정예정일 등을 기재한다.

주5) "이론권리락주가에 대한 할인율", "조정주가에 대한 할인율",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은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기재하고, 할증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등에서 회사에서 정한 할증율을 기재한다.

주6)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소수점 이하 7자리까지 기재한다.

주7)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의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에는 최대주주,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계열회사, 기타 등으로 기재하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에 의한 구체적인 관계를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한다.

(예시) 최대주주 홍길동의 배우자, 최대주주인 (주)ABC의 임원

주8) 상기 기재사항 외의 신주권리내용의 특이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단주처리방법, 자기주식 등 신주의 배정권이 없는 주식의 총수, 배당기산일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9)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11)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외국지주회사 포함)의 자회사(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기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